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7호 2023. 5. 16.(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80호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81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2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0
남해군 규칙 제1223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1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7
남해군 고시 제2023-6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18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678호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2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80호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힐링숲타운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 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제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남해힐링숲타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및 감면기준
2. 입장료 반환기준
3.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남해힐링숲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장료 등)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예약) 남해힐링숲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 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당일 이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1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및 감면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시 설 명	구 분	1인당 입장료(원)		비 고
		개 인	단 체	
남해힐링숲타운	성 인	2,000	1,600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 린 이	1,000	800	

※ 기준 연령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어린이 : 3세 이상 13세 미만

※ 단체 : 20명 이상

2.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입 장 료	<p>면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3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7.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8.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2]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이용예정일 기준)		반환기준	비고
입장료	7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50% 공제 후 반환	
	제6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남해군 조례 제2681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3조”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해수욕장 관리위탁·운영의 내용)” 을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해수욕장 관리위탁·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를 “(해수욕장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를 “해수욕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2의 사용료” 를 “사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시중가격,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5할” 을 “제1호는 면제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6세” 를 “6세” 로, “만 65세” 를 “65세”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만 24세” 를 “24세”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해수욕장 사용료 기준

구분	이용기준	부과기준	사용료 범위	비 고
야영장 (차박 포함)	사이트 당	12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15,000원 ~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기·성수기, 평일·주말, 반일·종일 사용료를 구분 하여 책정한다. ※ 종량제 봉투(20ℓ)를 24시간 기준 1매 무상 제공한다. ※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 기준 사용료의 2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예약 취소 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규정에 따른다.
샤워장	1인	1회	500원~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객의 경우 최대 4인까지 무상 이용 허용 가능
평상	개소 당	반일 또는 종일	15,000원 ~ 50,000원	
파리솔, 튜브 등 물품의 대여	1개	12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2,000원 ~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형 물품의 경우를 포함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2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23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위: 원)

○ 상주은모래비치

시설명	기준	비수기		성수기(7~8월)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야영장 (차박형- 하천방향)	8시간 (9시~17시 중)	15,000	20,000		
	24시간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45,000 (연박 감경 시 40,000원)	
야영장 (차박형- 바다방향)	8시간 (9시~17시 중)	20,000	25,000		
	24시간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50,000 (연박 감경 시 45,000원)	
샤워장	1인 1회	2,000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별표]

(단위: 원)

○ 송정솔바람해변

시설명	기준	비수기		성수기(7~8월)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야영장 (차박형)	8시간 (9시~17시 중)	15,000	20,000	/	/
	24시간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30,000 (연박 감경 시 25,000)	35,000 (연박 감경 시 30,000)
야영장 (텐트형)	8시간 (9시~17시 중)	15,000	15,000	/	/
	24시간	15,000 (연박 감경 시 12,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샤워장	1인 1회	2,000			
코인샤워장	1회	500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인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단, 성수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단위: 원)

○ 설리해수욕장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당일(9시~17시)	전일(24시간)
평상	소형	20,000	30,000
	대형	30,000	50,000
샤워장	1인 1회	2,000	
코인샤워장	1인 1회	500	

※ 평상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단위: 원)

○ 두곡·월포해수욕장

시설명	기준	비수기		성수기(7~8월)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야영장 (데크/차박)	8시간 (9시~17시 중)	15,000	15,000	15,000	20,000
	24시간	15,000 (연박 감경 시 12,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샤워장	1인 1회	2,000			

-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 ※ 개장기간에는 차박형 야영장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단위:원)

○ 사촌해수욕장

시설명	기준	비수기		성수기(7~8월)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야영장 (데크/차박)	8시간 (9시~17시 중)	15,000	15,000	15,000	20,000
	24시간	15,000 (연박 감경 시 12,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0,000 (연박 감경 시 16,000)	25,000 (연박 감경 시 20,000)
샤워장	1인 1회	2,000			

※ 야영장의 평일/주말 구분은 체크 아웃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24시간제: 체크인 14:00, 체크아웃 익일 12:00)
 ※ 야영장은 8시간제(당일제)의 경우, 24시간제(전일제)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현장 예약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창선천(지방하천)
- 2.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번지
- 4. 점용목적 : 전주 신설 4주
-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668번지
- 6. 점용면적 : 0.569㎡
- 7. 점용기간 : 2023. 5. 9.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3-6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624,468,418	609,114,284	15,354,134	2.52%
일 반 회 계	546,043,366	532,762,416	13,280,950	2.49%
특 별 회 계	78,425,052	76,351,868	2,073,184	2.72%
상수도특별회계	20,640,290	21,338,242	△697,952	△3.27%
청사건립특별회계	20,031,331	20,000,000	31,331	0.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8,092	836,556	△68,464	△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5,883	222,000	13,883	6.25%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6,749,456	33,955,070	2,794,386	8.23%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46,043,366	532,762,416	13,280,950	2.49%
지 방 세 수 입	29,071,166	29,071,166	0	0.00%
지방세	29,071,166	29,071,166	0	0.00%
세 외 수 입	21,415,880	18,513,879	2,902,001	15.67%
경상적세외수입	11,456,249	10,033,379	1,422,870	14.18%
임시적세외수입	9,419,828	7,989,898	1,429,930	17.9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39,803	490,602	49,201	10.03%
지방교부세	248,887,000	248,627,000	260,000	0.10%
조정교부금등	24,474,154	23,123,254	1,350,900	5.84%
보조금	191,541,483	185,991,245	5,550,238	2.98%
국고보조금등	144,049,336	139,149,333	4,900,003	3.52%
도비보조금등	47,492,147	46,841,912	650,235	1.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53,683	27,435,872	3,217,811	11.73%
보전수입등	29,484,043	27,435,872	2,048,171	7.47%
내부거래	1,169,640	0	1,169,640	순증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8,425,052	76,351,868	2,073,184	2.72%
세외수입	5,190,480	5,062,442	128,038	2.53%
경상적세외수입	4,835,800	4,814,000	21,800	0.45%
임시적세외수입	179,480	73,242	106,238	145.0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75,200	175,200	-	0.00%
조정교부금등	500,000	-	500,000	순증
보조금	19,603,100	16,500,656	3,102,444	18.80%
국고보조금등	8,689,927	6,701,272	1,988,655	29.68%
도비보조금등	10,913,173	9,799,384	1,113,789	11.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31,472	54,788,770	△1,657,298	△3.02%
보전수입등	3,042,397	1,125,582	1,916,815	170.30%
내부거래	50,089,075	53,663,188	△3,574,113	△6.66%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46,043,366	532,762,416	13,280,950	2.49%
인 건 비	66,293,025	66,666,527	△373,502	△0.56%
물 건 비	32,954,118	33,962,791	△1,008,673	△2.97%
경 상 이 전	201,092,579	195,272,249	5,820,330	2.98%
자 본 지 출	177,196,204	172,779,976	4,416,228	2.56%
용 자 및 출 자	42,000	42,000	-	0.00%
내 부 거 래	52,191,216	53,998,189	△1,806,973	△3.35%
예 비 비 및 기 타	16,274,224	10,040,684	6,233,540	62.08%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78,425,052	76,351,868	2,073,184	2.72%
인 건 비	933,499	875,770	57,729	6.59%
물 건 비	7,228,863	8,047,813	△818,950	△10.18%
경 상 이 전	8,892,008	8,937,476	△45,468	△0.51%
자 본 지 출	35,818,321	32,994,657	2,823,664	8.56%
용 자 및 출 자	10,383	0	10,383	순증
내 부 거 래	25,464,328	25,464,328	-	0.00%
예 비 비 및 기 타	77,650	31,824	45,826	144.0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678호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재0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00
	소하천명		사무중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85번지(1536관련)		
	면적	2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3. 5. 9.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